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186)

2. 제출이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여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 단순 반복내용 삭제(안 제5조, 제9조)
- 다. 별표 내용 변경 및 보완 등
 - 변 경 : 시설주관부서, 시설의 위치, 시설명칭, 주요기능
 - 삭 제 : 푸드마켓 2호점 1개소
 - 추 가 : 용강노인복지관 외 14개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 이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조(정의)	-----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	·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에 따른 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	
		-----	노숙인 복지시설 -----	
		-----	-----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

----- 법 제34조제5항-----

-----.

② -----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

③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
-----.

④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시설관리 등) -----

----- 해지 -----

-----.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현행					개정안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연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1	복지행정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1	복지정책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2		푸드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2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3		푸드마켓 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3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춘로 26길 10(노고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4		푸드마켓 3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춘로 26길10(노고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4		아동청년과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5	가정복지과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영유아 가족 지원	5	노인장애인과	우리마포복지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춘로 26길10(노고산동,복지관4,5층)	노인복지관
6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우리마포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춘로 26길10(노고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6		아현실버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	노인복지관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재활 시설	7		용강노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길 31(용강동)	노인복지관
8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	장애인직업 재할시설	8		마포노인복지센터(노인요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2길 6-2(공덕동)	노인요양시설
9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길9-22(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재활 시설	9		마포노인복지센터(테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마포구 만리재옛2길 6-2(공덕동)	재가노인복지시설
10		아현실버문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10		망원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1길 61(망원동)	재가노인복지시설
11		마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	장기요양보 험대상 및 저소득 노인보호	11		아현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	재가노인복지시설
12		아현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8길 6(아현동)	장기요양보 험대상 저소득 노인보호	12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4층,6층)	재가노인복지시설
13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	장기요양보 험대상 어르신보호	13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춘로26길 10(노고산동,복지관4,5층)	재가노인복지시설
14		한서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	장기요양보 험대상 어르신보호	14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4층)	재가노인복지시설
15		독거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6, 402호(동교동)	노인돌봄서비스제공	15		한서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 1층)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행		개정안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16	노인 장애 인과	상암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2(상암동, 2층)	재가노인복 지시설
17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아현동, B1층)	재가노인복 지시설
18		마포노인복지센터 부설 마포재가노인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공덕동)	재가노인복 지시설
19		마포 어르신 돌봄통 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8-14(상수동)	재가노인복 지시설
20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8길 5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21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4길 35(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22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4길 35(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 설
23		우리마포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 설
24		마포푸르메스포츠허브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장애인체육 시설
25		푸르메재단 벚순어린이재 활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26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2층(상암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7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10(노고산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8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B2층(상암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이 2019.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2019.8.1 시행되면서, 교육복지국 소관부서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로 변경 설치되었습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의 내용 중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마켓 2호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정정하고 3호점을 삭제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여 아동청년과 사무로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우리마포복지관” 등 10개 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암데이케어센터” 등 13개 신규 복지시설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8월 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속조치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규정·사무관리·시설관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산하복지시설 지원·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부. |
| 2. 관계법령 | 1부.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김은숙 (☎ 3153-8831)

【붙임 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별표] <2014.11.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1	복지 행정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2		푸드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3		푸드마켓 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 (신공덕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4		푸드마켓 3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5	가정 복지과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 (신공덕동)	영유아·가족 지원
6	어르신 복지 장애인 과	우리마포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성산동)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길 9-22(성산동)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		아현실버문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 (아현동)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11		마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	장기요양보험대상 및 저소득노인보호
12		아현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8길 6(아현동)	장기요양보험대상 및 저소득노인보호
13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	장기요양보험대상 어르신보호
14		한서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	장기요양보험대상 어르신보호
15	독거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6, 402호(동교동)	노인돌봄서비스제공	